

西紀 1983 年 7 月 27 日 制定施行
西紀 1987 年 7 月 28 日 改定施行
西紀 1991 年 1 月 28 日 改定施行
西紀 1993 年 4 月 23 日 改定施行
西紀 1994 年 4 月 11 日 改定施行
西紀 1994 年 12 月 2 日 改定施行
西紀 1998 年 4 月 20 日 改定施行
西紀 1999 年 2 月 5 日 改定施行
西紀 1999 年 5 月 27 日 改定施行
西紀 1999 年 6 月 16 日 改定施行
西紀 1999 年 8 月 2 日 改定施行
西紀 2003 年 1 月 10 日 改正施行
西紀 2003 年 3 月 13 日 改正施行
西紀 2004 年 9 月 9 日 改正施行
西紀 2004 年 11 月 5 日 改正施行

定 款

仁川廣域市個人택시運送事業組合

목 차

제 1 장 , 총 칙

제 1 조 (목 적)

제 2 조 (명 칭)

제 3 조 (사업구역)

제 4 조 (사 무 소)

제 5 조 (조합의 사업)

제 6 조 (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

제 2 장 , 조 합 원

제 7 조 (조합원의 자격)

제 8 조 (조합원의 권리)

제 9 조 (조합원의 의무)

제 10 조 (경비부과)

제 11 조 (조합원의 제재)

제 3 장 , 임 원 및 선 출 방 법

제 12 조 (임 원)

제 13 조 (임원의 자격)

제 14 조 (선출방법)

제 15 조 (임 기)

제 16 조 (임원의 임무)

제 17 조 (보 수)

제 4 장 , 대 의 원

제 18 조 (대 의 원)

제 19 조 (대의원 임기)

제 20 조 (대의원 선출방법 및 임무)

제 5 장 , 지 부

제 21 조 (지 부)

제 22 조 (지 부 장)

제 6 장 , 회 의 및 의 결

제 23 조 (회의의 소집)

제 24 조 (회의의 성립 및 의결)

제 25 조 (의장 표결권 및 전무이사의 의결권)

제 26 조 (감사의 출석)

제 27 조 (긴급사항 처리)

제 28 조 (총회의 의결사항)

제 29 조 (이사회회의 의결사항)

제 30 조 (의사록 작성)

제 7 장 , 자 산 및 회 계

제 31 조 (자 산)

제 32 조 (자산의 관리)

제 33 조 (사업년도)

제 34 조 (정관, 총회의사록 및 조합원 명부 비치)

제 35 조 (사무감사)

제 36 조 (감사결과의 승인 및 보고)

제 37 조 (규정의 제정)

제 8 장 , 해 산

제 38 조 (조합의 해산과 청산인)

제 9 장 , 부 칙

제 39 조 (시 행 일)

제 40 조 (경과조치)

제 1 장 , 총 칙

제 1 조 (목 적)

본 조합은 상호간의 친목과 단결을 통하여 권익을 수호하고 인천광역시내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관하여 국가시책에 적극 호응하며, 사회공익 사업자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운송사업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 칭)

본 조합은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칭한다)이라 칭하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한 법인으로 한다.

제 3 조 (사업구역)

본 조합의 사업구역은 인천광역시 일원으로 한다.

제 4 조 (사 무 소)

1. 본 조합의 사무소는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287-25 번지에 둔다.
2. 본 조합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합 산하에 지역별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5 조 (조합의 사업)

본 조합은 제 1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2.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진흥 발전과 필요한 통계의 작성 및 조사 연구사업.
3. 조합원의 교육 훈련.
4.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경영개선 및 지도에 관한 사항.
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 27 조 규정에 의거 정부가 위탁하는 사업.
6. 새마을 운동 및 자율화 업무, 지역사회 발전 및 개발에 참여.
7. 조합원의 공제 및 복지사업.
8. 기타 본 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 조 합 원

제 6 조 (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

1. 조합은 조합원 또는 비 조합원에 대하여 총회의 승인에 따라 공무에 필요한 수수료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
2. 비 조합원이 조합 소유의 유·무형 재산을 이용할 때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 7 조 (조합원의 자격)

1.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조합원이 될수 있으며 가입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조합원(재가입 포함)이 되려는 자는 기존 조합원이 부담하여 취득한 조합 재산들을 무상 공동 사용하게 되므로 이를 공유함에 따른 체납된 조합비 및 가입금을 납부해야 한다.
3. 사업면허가 양도인가 되거나 취소 또는 폐지된 자는 자동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
4. 조합원 자격 상실자 및 탈퇴자는 (상실·탈퇴)전까지 납부한 조합비 일체를 반환 청구 소송할 수 없다.

제 8 조 (조합원의 권리)

본 조합의 조합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총회 소집의 요구 및 선거권과 피선거권.
2. 본 조합 서류 열람 시 제 규정에 의한 복제와 유출은 할 수 있다.
3. 본 조합원에 할당된 물자수배.
4. 본 조합 공동시설 이용.

제 9 조 (조합원의 의무)

1. 본 조합의 조합원은 본 정관과 총회 및 이사회 의결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제 10 조의 경비부과에 대한 이행과 본 조합의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공익사업자로서의 본분을 다하여야 한다.
3. 조합비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자는 강제 징수할 수 있으며, 정관 및 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일체의 제반 업무에 대한 협조를 거부할 수 있다.

제 10 조 (경비부과)

조합원은 조합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1. 가입비 : 조합의 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조합에 가입하는 조합원에게 일정 금액을 부과한다.

2. 월레비 : 조합원은 균등하게 총회에서 결의된 조합비를 매월 부과한다.

(이사회회의 심의)

3. 특별부과금 : 조합의 운영상 필요할 때 및 특별한 경우에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별도로 부과한다. (이사회회의 심의)

4. 가입비 및 체육진흥기금 금액을 하향조정하고, 시행 공포일 이후 가입자는 이직위로금만 지급하며, 가입비는 환불하지 않는다. 단, 시행 공포일 이전 가입자에 대해서는 개정 전 구법을 준용하여 이사회에서 심의하고 총회에서 승인한 가입비만 환불한다.

제 11 조 (조합원의 제재)

1. 조합은 조합원 중 국가 또는 조합 발전을 저해하거나 본 정관 제 9 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는 제 규정으로 제재할 수 있다.

단, 아래 각 호에 대한 제재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조합원 자격 정지 또는 제명

② 제 8 조 권리 중 선거권 및 피선거권 일부 또는 전부 제한

③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제재 건의

2. 조합의 직책(선출직, 임명직)보유 조합원 중 직분과 직무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는 제 규정에 의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 3 장 , 임 원 및 선 출 방 법

제 12 조 (임 원)

본 조합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명.

2. 이사 10명

3. 감사 2명.

4. 전무이사 1명.

제 13 조 (임원의 자격)

1. 조합원이 아니면 본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단, 전무이사는 비 조합원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2. 본 조합의 임원 중 전무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본 조합에 가입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한(임원:만 5 년이상, 이사장:만 7 년이상) 근속 조합원 으로 정한다.
3. 선거 공고 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조합 정관이 정한 조합비를 계속해서 4 개 월 이상 연체한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4. 임원이 된 후 조합 정관이 정한 조합비를 계속해서 4 개월 이상 연체한 자는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5. 5 대 강력범죄(살인,강간,강도,마약,약취유인)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었거나 조합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상 배임, 수뢰, 공금유용 및 횡령 등의 범죄 행위로 50 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었거나 형의 종료일 로부터 5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조합 및 조합원을 상대로 민, 형사상 진정, 고소, 고발, 소송 등을 남용하여 조합 및 조합원이 무죄 또는 무혐의로 확정되어 재산상 피해를 입힌 자는 확정 일로부터 3 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제 14 조 (선출방법)

본 조합의 임원 선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이사장은 전체 조합원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2. 이사 선출은 대의원으로 선출된 36 명중에서 지역별 회원 비례에 따라 간선제로 10 명 선출한다.
3.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현 이사 및 대의원이 출마할 경우에는 선거 10 일전에 그 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4. 전무이사는 임기 만료시나 임기중 결원 발생시 공히, 과거 조합직원 또는 전·현직 조합원이 아닌 자 중에서 공개채용을 통해 행정능력을 겸비한 자 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5. 이사장 및 전무이사는 선출 및 선임된 후 인천광역시시장에게 15 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5 조 (임 기)

1. 본 조합의 이사장, 이사 및 전무이사의 임기는 3 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 년으로 한다. 단, 이사장은 1 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잔여기간 1 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차기총회에서 보궐 선출한다. 단, 감사가 결원이 된 때에는 잔여임기에 관계없이 보궐 선출한다.
3.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4.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 시까지 그 직무를 계속 행하여야 한다.

제 16 조 (임원의 임무)

1. 이사장은 본 조합을 대표하며 조합 업무를 총괄하고 각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한 이사가 그 직무를 총회의 결의에 따라 대리한다. 단 , 지명 할 수 없는 경우는 총회 또는 임시총회에서 이사장 직무를 대행할 이사를 선출하고, 단, 잔여임기가 1 년 이상일 경우 보선하여 잔여임기만 행사권을 가지며 잔여임기가 1 년 이하일 경우는 직무 대행자가 시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 의 구성원이 되며 제 29 조에 의한 의결을 한다.
4. 감사는 조합의 업무 및 재산의 상황을 감사한다.
단, 조합의 감사는 임원 선출에 관여할 수 없다.
5. 전무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일상 업무를 총괄한다.
6. 임원의 대리권 행사는 일체 불허한다.

제 17 조 (보 수)

1.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이사장 및 전무이사는 유급으로 한다.
2. 이사장 및 전무이사 급여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3. 임원 또는 대의원이 조합 업무로 출장할 때는 소정의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4 장 , 대 의 원

제 18 조 (대 의 원)

1. 본 조합은 총회를 위하여 대의원을 26 명 이내로 둔다.
2. 대의원은 지역별로 선출하며 총회의 구성원이 된다.

3. 선거공고 일로부터 1년 이내에 조합 정관이 정한 조합비를 계속해서 4개월 이상 연체한 자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
4. 대의원이 된 후 조합 정관이 정한 조합비를 계속해서 4개월 이상 연체한 자는 대의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 19 조 (대의원 임기)

1.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 대의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지역별 차 순위 득표자가 자동 승계 된다.
3. 보궐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20 조 (대의원 선출방법 및 임무)

1. 본 조합의 대의원은 지역별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선출한다.
2. 본 조합의 대의원은 정관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타 주요 사항을 의제로 할 수 있다.
3. 본 조합의 대의원은 임원의 선출 및 임원 불신임 권고 안을 요청 할 수 있다. 단, 감사의 경우 해임한다.

제 5 장 , 지 부

제 21 조 (지 부)

본 조합은 총회의 결의를 얻은 후 제 4 조 2 항에 의하여 지역별로 지부를 둘 수 있다.

1. 지부는 본 조합에서 지시된 업무만 행한다.
2. 1 개의 구 단위로 지부 구성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2 개의 구 단위로 통합 지부를 구성한다.

제 22 조 (지 부 장)

1. 지부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소속지역 지부를 통괄한다.
2. 지부장은 이사장이 대의원 당선자중에 지명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하며, 제 5 조에 규정된 사업과 조합의 업무지시를 추진한다. 단, 지부장 해임시는 대의원으로 복귀한다.

제 6 장 , 회 의 및 의 결

제 23 조 (회의의 소집)

1. 본 조합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및 이사회로 한다.
2. 총회는 년 4 회 개최한다.(정기 1 회, 임시 3 회)
3. 임시총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대의원 1/2 이상과 조합원 1/3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4. 대의원 및 조합원이 요구하는 임시총회는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5. 이사회의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 24 조 (회의의 성립 및 의결)

1. 회의는 조합원 및 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서 성립되며 출석인원 과반수로서 의결한다.
2. 출석 인원중 개인사정으로 회의도중 퇴장했을 경우에는 회의는 성립되며 의결권은 기권으로 한다.
3. 정관의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4. 조합 해산 및 임원의 불신임 권고안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임원의 불신임 권고안은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5. 감사의 해임안은 의결권을 가진 대의원 1/2 출석과 출석대의원 2/3 이상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25 조 (의장 표결권 및 전무이사의 의결권)

1.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 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2. 전무이사는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 26 조 (감사의 출석)

1. 본 조합의 감사는 제 16 조 4 항의 직무와 필요시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가지지 않는다.
2. 감사는 자체 감사시 전,후반기(각각 3 일), 총회시 전,후반기 감사보고 2 회, 이사회시 분기별(4 회) 출석일수를 가지며 2 회를 연장하여 출석할 수 있다.

제 27 조 (긴급사항 처리)

1.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총회의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 결의로서 처리할 수 있다.
2. 전항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총회를 소집 또는 서면 결의로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 28 조 (총회의 의결사항)

1. 정관 변경 및 조합의 주요사항.
2. 임원의 선출 및 임원의 불신임 권고안.
단, 임원 불신임 권고안은 서면 결의를 할 수 없으며 동일한 사유로 재차 의제로 할 수 없다.
3. 감사 해임안.
4. 예산안 및 수지결산 승인.
5. 사업계획 승인.
6. 제 6 조 및 제 10 조, 제 11 조, 제 21 조에 관한 사항.
7. 복지회 사업계획, 수지결산 및 규정 승인.
8. 기타 주요 사항.

제 29 조 (이사회 의결사항)

다음의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2. 총회의 부의 안건에 관한 사항 심의.
3. 조합 제 규정의 제정 및 변경.
4. 사업계획 수립.
5. 예산안 편성 및 수지결산의 심의.
6. 제 11 조의 조합원 제재에 관한 사항.
7. 예산의 항목 전용 및 예비비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8. 감사결과 보고 및 심의
9. 기타 주요 사항.

제 30 조 (의사록 작성)

1. 총회 및 각종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 조합원 3명 이상의 서명 날인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단, 전자의 회의록을 익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① 일시 및 장소.
- ② 회의 구성원의 재적수와 출석 인원의 성명.
- ③ 부의 안건.
- ④ 의사의 요령.
- ⑤ 결의사항 및 찬반의 수.
- ⑥ 기타 참고 사항.

제 7 장 , 자 산 및 회 계

제 31 조 (자 산)

본 조합의 자산은 다음과 같이 조성한다.

1. 본 조합에 속한 토지, 건물, 설비 및 비품.
2. 가입비, 월례비 및 특별부과금.
3. 조합원의 출자금.
4. 보조 또는 기부에 의한 자산.
5. 본 조합의 사업 및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
6. 사용료 및 수수료.
7. 기타 수입금.

제 32 조 (자산의 관리)

본 조합의 자산관리는 이사장 및 전무이사의 책임으로 관리 운영한다.

단, 투자 목적 자산 관리는 이사회에 결의.

제 33 조 (사업연도)

본 조합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에 준한다.

제 34 조 (정관, 총회의사록 및 조합원명부 비치)

이사장은 정관과 총회의 의사록 및 조합원명부를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35 조 (사무감사)

이사장은 정기총회의 회의 일로부터 1주일 전에 조합의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수지결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하여 감사를 필하고, 조합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36 조 (감사결과에의 승인 및 보고)

1. 감사는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하며 이사회는 이를 심의 하여야 한다.
2. 감사는 감사결과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심의한 결과 및 감사 현황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예산 및 수지결산은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감사가 보고한 지적사항 및 개정개선점 유발시 책임 소재 등 대체 방안을 총회보고 시 가결한다.
4. 승인된 수지결산서는 이사장이 인천광역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37 조 (규정의 제정)

본 정관 외에 필요한 조합의 규정 및 규칙은 이사회에 결의에 의하여 제정하되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선거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 총회의 결의로 제정하여 시행한다. 단, 복지회 사업계획 및 규정과 예산은 이사회에 심의를 거쳐 대의원 총회 승인 후 시행한다.

제 8 장 , 해 산

제 38 조 (조합의 해산과 청산인)

1. 조합의 해산은 주무관청의 명령 또는 민법규정에 의한다.
2. 조합이 해산할 때 조합의 잔여 자산은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 9 장 , 부 칙

제 39 조 (시행일)

1. 본 정관은 대의원 총회 후 14일 이내에 인천광역시장에게 보고한다.
2. 본 정관은 인천광역시장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40 조 (경과조치)

1. 본 조합 창설 이전의 인천직할시택시운송사업조합 개인택시지부에서 선출된 임원 및 기타 공직은 본 정관이 승인된 날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2. 창립연도의 회계 마감은 1983년 8월 1일부터 198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 창립연도의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임기 만료 년도의 회계 마감일로 한다.
4. 본 정관은 1983년 7월 27일 제정 시행한다.
5. 본 정관은 1987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6. 본 정관은 1991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7. 본 정관은 1993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8. 본 정관은 1994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9. 본 정관은 1994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10. 본 정관은 1998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11. 본 정관은 1999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12. 본 정관은 1999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13. 본 정관은 1999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14. 본 정관은 1999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15. 본 정관은 2003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16. 본 정관은 2003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17. 본 정관은 2004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18. 본 정관은 2004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